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우리자산운용㈜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http://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4.04.30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06.14**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 본점

(☎02-2118-0500 [www.wooriam.kr](http://www.wooriam.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4.04.30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펀드코드 : 16022]							
투자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 및 유용한 현금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보다는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종류(Class)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0.4300	0.3000	0.1600	0.4351	45	91	140	244	54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2800	0.1500	0.2200	0.2851	29	60	92	160	36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b>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는 '수수료미징구' 클래스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일시징구 되지만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낮게 책정되는 '수수료선취'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Class)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5.01~ 2024.04.30			2022.05.01~ 2024.04.30	2021.05.01~ 2024.04.30	2019.05.01~ 2024.04.3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9.11.10	3.44	3.04	2.26	1.67	1.89					
비교지수(%)	-	3.35	3.10	2.40	1.86	2.12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수익률 변동성(%)	-	0.05	0.10	0.17	0.17	0.12																																					
주1) 비교지수 : (1 * ([통안1년물]*0.1+[CD금리]*0.5+[CALL]*0.4))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 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나 큼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전문인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생년</th> <th rowspan="2">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th> <th rowspan="2">운용 경력 년수</th> </tr> <tr> <th>집합투자 기구수(개)</th> <th>운용규모 (억원)</th> <th colspan="2">운용역</th> <th colspan="2">운용사</th> </tr> </thead> <tbody> <tr> <td>박찬곤</td> <td>1987</td> <td>책임 (팀장)</td> <td>9</td> <td>169,945</td> <td>-</td> <td>-</td> <td>3.91</td> <td>3.58</td> <td>5년 11개월</td> </tr> <tr> <td>윤종현</td> <td>1992</td> <td>부책임 (대리)</td> <td>10</td> <td>174,957</td> <td>3.95</td> <td>3.63</td> <td></td> <td></td> <td>2년 6개월</td> </tr> </tbody> </table>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박찬곤	1987	책임 (팀장)	9	169,945	-	-	3.91	3.58	5년 11개월	윤종현	1992	부책임 (대리)	10	174,957	3.95	3.63			2년 6개월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박찬곤	1987	책임 (팀장)	9	169,945	-	-	3.91	3.58	5년 11개월																																			
윤종현	1992	부책임 (대리)	10	174,957	3.95	3.63			2년 6개월																																			
<p>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2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투자자 유의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금리변동위험</td> <td>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주요투자 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또는 신용등급 하락 에 따른 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MMF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PF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매입·환매 특례	<p>◆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li> <li>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li> <li>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 중 큰 금액) 내에서 MMF수익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li> </ul> <p>주1)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p> <p>주2) 상기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기준가	산정 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www.wooriam.kr">www.wooriam.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우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wooriam.kr">www.wooriam.kr</a> )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10조 쪽	
효력발생일	2024년 06월 14일	준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wooriam.kr">www.wooriam.kr</a>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b>일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단,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없으므로 투자시 수수료미징구(C)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b>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판매경로 오프라인	<b>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http://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http://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http://www.wooriam.kr))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16022)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H40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0427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W851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AH402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W850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H658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H659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종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사항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http://www.wooriam.kr))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16022)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H401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0427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W851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AH402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W850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H658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H659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변경사항
2009.09.03	효력발생
2009.10.06	법령변경에 따른 투자대상/ 투자제한 변경
2011.02.16	책임운용역변경(손경수→류진호)
2012.03.09	책임운용역변경(류진호→이정호)
2013.04.0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013.06.27	투자대상자산 추가 (전자단기사채등)
2013.11.01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투자제한 변경
2014.01.14	세액공제, 연금외 형과세등 법령변경사항반영, 책임운용역변경(이정호→류진호)
2015.12.22	정기갱신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체계 개편
2016.12.21	정기갱신
2017.03.2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류진호→김동환),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2017.09.18	수익증권 신설(C-G, C-P1e),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7.11.24	수익증권 신설(C-e),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김동환→이지현, 김동환)
2018.03.02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소득세법 제59조의3 개정사항 반영
2019.02.2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19.04.11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기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8.01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2019.09.16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기재정정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2019.09.30	투자신탁의 명칭변경, 투자대상자산 범위 축소(사채권 → 국공채), 책임운용인력 변경(이지현 → 황우성)
2020.02.12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0.03.1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21.02.16	정기갱신
2021.03.24	Class C-P, C-Pe 신설,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2.03.17	정기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01.06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11.03	책임 및 부책임운용역 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6.14	펀드명칭 변경(우리뉴스스타개인MMF1호(국공채)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찬곤	1987	팀장	9	169,945	-	-	3.91	3.58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5년 11개월			2014.01 ~ 2016.01 KTB투자증권 채권운용 2016.01 ~ 2023.09 멀티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2023.10 ~ 현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2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윤종현	1992	대리	10	174,957	3.95	3.63	3.91	3.58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2년 6개월			2018.10 ~ 2019.06 KIS채권평가 원화채권평가 2019.07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2팀이 담당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황우성	2019.09 ~ 2023.11
박찬곤	2023.11 ~ 현 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동환	2017.11 ~ 2023.11
윤종현	2023.11 ~ 현 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방형, 추가형, 공모형, 종류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일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없으므로 투자시 수수료미징구(C)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채무증권 (채권등)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
3. 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기업어음증권
4. 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금융기관에의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단기사채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 보유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 |  |
|--|
| (1) 현금   |
| (2) 국채증권                                       |
| (3) 통화안정증권                                     |
|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 양도성 예금증서 · 정기예금                             |
| 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국공채                         |
| 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기업어음증권              |
| 라. 단기사채  |
| (5) 환매조건부매수                                    |
| (6) 단기대출                                       |
|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1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 (1) 제10호 (1)~(3)에 해당하는 것
-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0호 (4) 각목에 해당하는 것
- (3) 제10호 (5)~(7) 까지에 해당하는 것

<b>12. 채무증권신용평 가등급의 제한 (양도성예금증서, 어 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b>	<p>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합니다)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li> <li>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li> <li>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li> </ol> <p>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p>
--	---

	<p>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p>
--	---

####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 환매조건부매수</li> </ul>
2. 동일종목투자	<p>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4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는 행위</p> <p>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p> <p>(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p> <p>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p> <p>(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p> <p>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p> <p>(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한다)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p> <p>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p> <p>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p> <p>(1) 만기 30일 이내일 것</p> <p>(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p> <p>(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p> <p>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p>
4. 증권의 차입 또는 대여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일정기간 후에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잔존만기의 제한	이 투자신탁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7. 투자대상의 제한	<p>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p> <p>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p>
8.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국채증권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채무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국공채, 단기사채, 기업어음증권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투자한도초과	<p>①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p> <p>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p>④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가. 투자대상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공채, 특수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CD, 어음 등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경기흐름과 국내외 시장 환경 및 채권시장의 수급을 감안하여 1년 이내 단기 구간에서 바벨/불렛/레더 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위험관리>

##### ▶ 신용 리스크

- 편입자산을 국공채, 특수채, 공사채 및 CD, 단기사채, CP 등 우량 등급 자산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최소화

##### ▶ 금리변동 리스크

- 펀드의 가중평균 만기를 적절히 관리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최소화
- 단기금리의 과거 움직임을 참고하여 금리 상승시 사전 대응성

##### ▶ 유동성 리스크

-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중심으로 편입하여 수시 출금에 대비
- MMF 설정/해지 추이 및 전체 수탁고 분석으로 자금동향 흐름 모니터링

### 나.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10%는 통안채 1년물, 50%는 CD금리, 40%는 Call금리를 가중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  $(1 * ([\text{통안1년물}]*0.1 + [\text{CD금리}]*0.5 + [\text{CALL}]*0.4))$

주) [통안1년물]은 1년만기 통화안정채권의 수익률을 말하며, [CD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 [Call]은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말합니다.

####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보다는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또는 신용등급 하락 에 따른 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

	<p>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특히 MMF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p>
--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의 고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PF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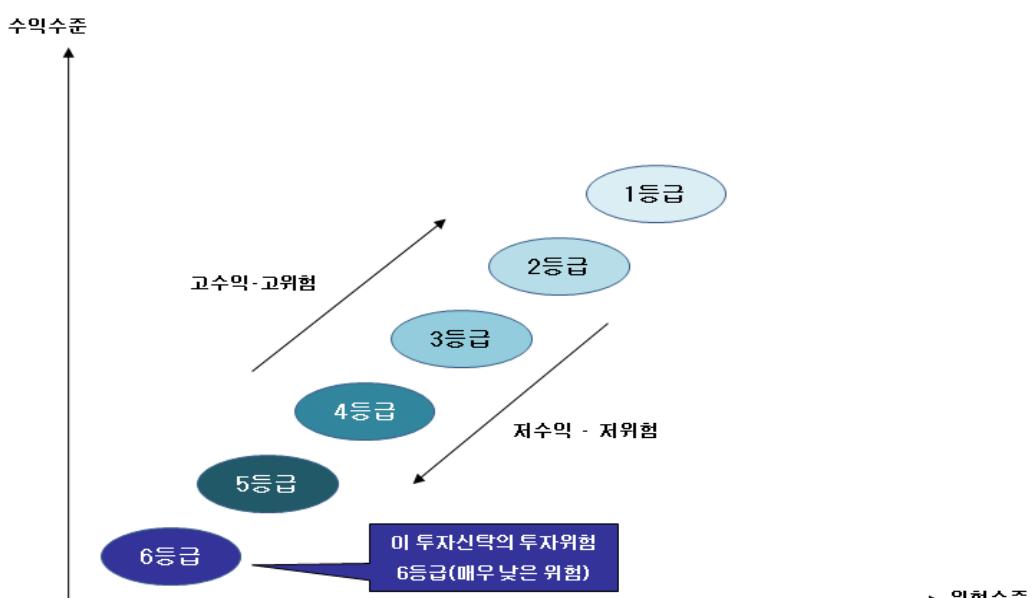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0.18%로 6등급 체계 중 6등급(표준편차 0.5%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t;우리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gt;

##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

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금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으로,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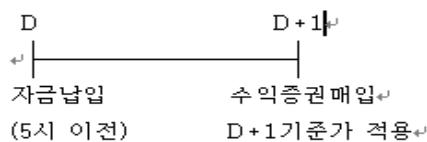
####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lass)	매 입 자 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펀드 클래스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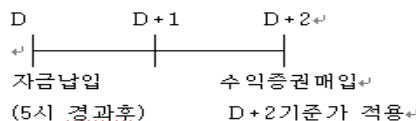
	개인연금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전일 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환매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17시(오후5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 예시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p>- 환매청구일(D)로부터 <b>2영업일(D+1)</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2영업일(D+1)</b>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b>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3영업일(D+2)</b>에 환매대금을 지급</p>

\*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8) 수익증권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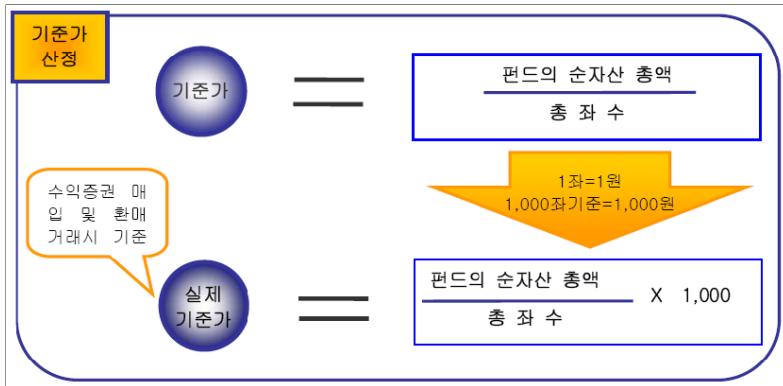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wooriam.kr">www.wooriam.kr</a>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취득원가과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 \* 시가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lass)		지급비율(연간,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없음	없음	없음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없음	없음	없음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없음	없음	없음	-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없음	없음	없음	-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없음	없음	없음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
부과기준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C	C-e	C-G	C-P1	C-P1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0980	0.0980	0.0980	0.0980	0.0980	매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판매회사보수	0.3000	0.1500	0.2250	0.2700	0.1350	3 개월 후급
신탁업자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20	0.0120	0.0120	0.0120	0.0120	
총보수	0.4300	0.2800	0.3550	0.4000	0.2650	
기타비용	0.0051	0.0051	-	0.0048	0.005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4351	0.2851	0.3550	0.4048	0.2700	-
(동종유형 총보수)	0.1600	0.2200	-	-	-	-
합성총보수비용 ( <small>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포함</small> )	0.4351	0.2851	0.3550	0.4048	0.2700	-
증권거래비용	0.0076	0.0074	-	0.0079	0.0077	사유 발생시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C-P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0980	0.098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2200	0.1100				
신탁업자보수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20	0.0120				
총보수	0.3500	0.2400				
기타비용	0.0049	0.0049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3549	0.2449				-
(동종유형 총보수)	-	-				-
합성총보수비용 ( <small>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포함</small> )	0.3549	0.2449				-
증권거래비용	0.0096	0.0077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증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31,241,160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2.11.10 ~ 2023.11.09]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예시

(단위:천원)

종류(Class)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45	91	140	244	548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5	91	140	244	548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9	60	92	160	362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9	60	92	160	362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36	74	114	199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6	74	114	199	449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41	85	130	227	511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1	85	130	227	511

C-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8	57	87	152	343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	57	87	152	343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36	74	114	199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6	74	114	199	449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5	51	79	138	312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	51	79	138	312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률,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설정되지 않아 투자시 수수료미징구(C)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총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현된 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경우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한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3.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4년 1월 1 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 천재지변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li> <li>-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li> <li>-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li> </ul>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원과 합산)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 (2022.11.10 ~ 2023.11.09)	신한회계법인	적정
제10기 (2021.11.10 ~ 2022.11.09)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9기 (2020.11.10 ~ 2021.11.09)	삼화회계법인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11기 (2023.11.09)	제10기 (2022.11.09)	제9기 (2021.11.09)
운용자산	570,784,751,932	265,753,405,476	187,688,878,169
증권	550,387,402,627	255,866,104,907	187,679,527,44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397,349,305	9,887,300,569	9,350,72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294,646,913	2,103,837,299	351,187,542
자산총계	574,079,398,845	267,857,242,775	188,040,065,71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715,972	5,444,716	4,199,142
부채총계	9,715,972	5,444,716	4,199,142
원본	552,907,503,990	262,636,401,816	186,575,639,228
수익조정금	5,592,436,573	879,539,080	597,560,487
이익잉여금	15,569,742,310	4,335,857,163	862,666,854
자본총계	574,069,682,873	267,851,798,059	188,035,866,569

[단위 :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11기 (2022.11.10 ~ 2023.11.09)	제10기 (2021.11.10 ~ 2022.11.09)	제9기 (2020.11.10 ~ 2021.11.09)
운용수익	11,842,685,924	3,391,868,417	726,869,801
이자수익	11,875,576,920	3,332,353,665	837,027,26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2,890,996	59,514,752	-110,157,465
기타수익	3,771,317,166	968,343,740	147,752,501
운용비용	-31,241,160	-17,071,124	-7,359,308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31,241,160	-17,071,124	-7,359,308
기타비용	-13,019,620	-7,283,870	-4,596,140
당기순이익	15,569,742,310	4,335,857,163	862,666,85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단위 : 백만원]

구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2,020,664.82	0.00	0.00	1,283,782.25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020,664.82	0.00	0.00	1,283,782.25	0.00	0.00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1기(2023.11.09)		제10기(2022.11.09)		제9기(2021.11.0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397,349,305		9,887,300,569		9,350,722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1. 콜론	0		0		3,2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73,300,000,000		59,200,000,000		53,000,000,000	
3. 매입여정	248,020,700,504		112,174,392,925		109,234,174,958	
4. 대출금	0		0		0	
유기증권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229,066,702,123		84,491,711,982		22,245,352,489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기증권	0		0		0	
파생상품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1. 매도유기증권미수금	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3,267,266,615		2,078,465,521		348,725,080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임금	27,380,298		25,371,778		2,462,462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3,294,646,913		2,103,837,299		351,187,542
		574,079,398,845		267,857,242,775		188,040,065,711
부 채						
운용부채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 매수유기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9,715,972		5,444,716		4,199,142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채총계		9,715,972	5,444,716	5,444,716	4,199,142	
자 본						
1. 원본	552,907,503,990		262,636,401,816		186,575,639,22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592,436,573		879,539,080		597,560,487	
3. 이월잉여금	15,569,742,310		4,335,857,163		862,666,854	
(발행좌수 당기: 552,907,503,990 좌 전기: 262,636,401,816 좌 전전기: 186,575,639,228 좌) (기준가격 당기: 1,038.27 원 전기: 1,019.86 원 전전기: 1,007.83 원)		15,569,742,310	4,335,857,163	0	862,666,854	0
자본총계		574,069,682,873	267,851,798,059	267,851,798,059	188,035,866,569	
부채와자본총계		574,079,398,845	267,857,242,775	267,857,242,775	188,040,065,711	

## 다. 손익계산서

과 목	제11기(2022.11.10 ~ 2023.11.09)		제10기(2021.11.10 ~ 2022.11.09)		제9기(2020.11.10 ~ 2021.11.09)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1. 이자수익	11,875,576,920	15,646,894,086	3,332,353,665	4,300,697,405	837,027,266	984,779,767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3,771,317,166		968,343,740		147,752,501	
4. 기타투자수익	0		0		0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87,481,701		75,699,716		17,219,377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72,959,634		50,399,020		12,597,789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4,522,067		25,300,696		4,621,588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20,372,697		16,184,964		127,376,842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05,108,248		9,979,715		126,996,87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15,264,449		6,205,249		379,972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b>운 용 비 용</b>		44,260,780		24,354,994		11,955,448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44,260,780		24,354,994		11,955,448	
6. 기타비용	0		0		0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5,569,742,310		4,335,857,163		862,666,854
<b>작당순이익(또는 작당순손실)</b>		0.028159759		0.016508973		0.004623684

## 2. 연도별 설정현황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2,626.36	2,626.36	17,627.21	17,986.39	14,724.50	15,027.76	5,529.08	5,529.08
2021.11.10 ~ 2022.11.09	1,865.76	1,865.76	8,297.68	8,378.53	7,537.07	7,609.12	2,626.36	2,626.36
2020.11.10 ~ 2021.11.09	597.89	597.89	4,311.10	4,329.97	3,043.23	3,056.12	1,865.76	1,865.7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 종류형 펀드

Class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1,529.29	1,529.29	7,709.06	7,839.87	6,597.99	6,708.03	2,640.35	2,640.35
2021.11.10 ~ 2022.11.09	1,149.94	1,149.94	4,545.73	4,577.72	4,166.39	4,195.11	1,529.29	1,529.29
2020.11.10 ~ 2021.11.09	383.73	383.73	2,443.18	2,447.61	1,676.97	1,680.01	1,149.94	1,149.94

ClassC-P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8.75	8.75	2.33	2.37	3.10	3.16	7.98	7.98
2021.11.10 ~ 2022.11.09	8.11	8.11	3.73	3.75	3.09	3.11	8.75	8.75
2020.11.10 ~ 2021.11.09	10.95	10.95	4.37	4.37	7.20	7.21	8.11	8.11

ClassC-P1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15.39	15.39	34.98	35.60	28.32	28.86	22.05	22.05
2021.11.10 ~ 2022.11.09	0.59	0.59	34.76	34.92	19.96	20.05	15.39	15.39
2020.11.10 ~ 2021.11.09	0.00	0.00	0.63	0.63	0.04	0.04	0.59	0.59

Class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1,070.65	1,070.65	9,833.75	10,028.67	8,037.89	8,202.52	2,866.51	2,866.51
2021.11.10 ~ 2022.11.09	712.94	712.94	3,663.13	3,694.11	3,305.43	3,332.78	1,070.65	1,070.65
2020.11.10 ~ 2021.11.09	205.25	205.25	1,865.38	1,870.57	1,357.69	1,361.22	712.94	712.94

Class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10.64	10.64	21.22	21.58	23.98	24.34	7.88	7.88
2021.11.10 ~ 2022.11.09	0.00	0.00	52.94	53.42	42.31	42.74	10.64	10.64

Class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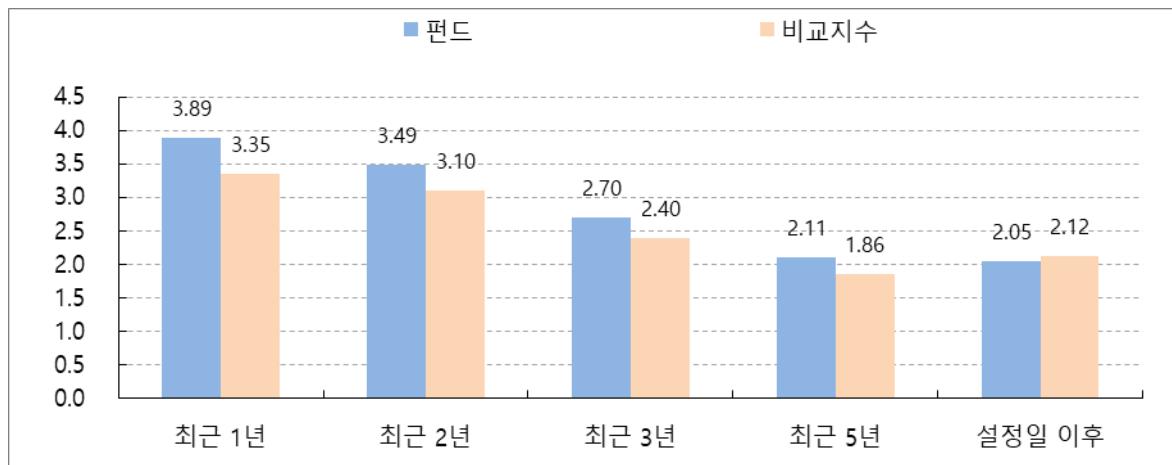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1.10 ~ 2023.11.09	0.00	0.00	6.08	6.15	5.55	5.62	0.53	0.53
2021.11.10 ~ 2022.11.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5.01~2024.04.30	2022.05.01~2024.04.30	2021.05.01~2024.04.30	2019.05.01~2024.04.30	2009.11.10~2024.04.30
펀드	2009.11.10	3.89	3.49	2.70	2.11	2.05
비교지수		3.35	3.10	2.40	1.86	2.12
ClassC	2009.11.10	3.44	3.04	2.26	1.67	1.89
ClassC-P1	2013.08.27	3.47	3.07	2.29	1.70	1.62
ClassC-P1e	2018.01.04	3.61	3.21	2.42		1.89
ClassC-e	2019.12.11	3.60	3.20	2.41		1.86
ClassC-Pe	2021.12.24	3.64	3.24			2.95
ClassC-P	2021.12.27	3.53	3.13			2.85
수익률 변동성		0.05	0.10	0.17	0.17	0.12

주1) 비교지수 : [\(1 \\* \(\[통안1년률\]\\*0.1+\[CD금리\]\)\\*0.5+\[CALL\]\\*0.4\)](#)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6)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05.01~2024.04.30	2022.05.01~2023.04.30	2021.05.01~2022.04.30	2020.05.01~2021.04.30	2019.05.01~2020.04.30
펀드	2009.11.10	3.89	3.09	1.14	0.77	1.70
비교지수		3.35	2.85	1.03	0.64	1.44
ClassC	2009.11.10	3.44	2.64	0.70	0.34	1.27
ClassC-P1	2013.08.27	3.47	2.67	0.73	0.37	1.29
ClassC-P1e	2018.01.04	3.61	2.81	0.87	0.50	
ClassC-e	2019.12.11	3.60	2.80	0.85	0.49	
ClassC-Pe	2021.12.24	3.64	2.84			
ClassC-P	2021.12.27	3.53	2.73			

주1) 비교지수 :  $(1 * ([통안1년물]*0.1+[CD금리])*0.5+[CALL]*0.4)$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로,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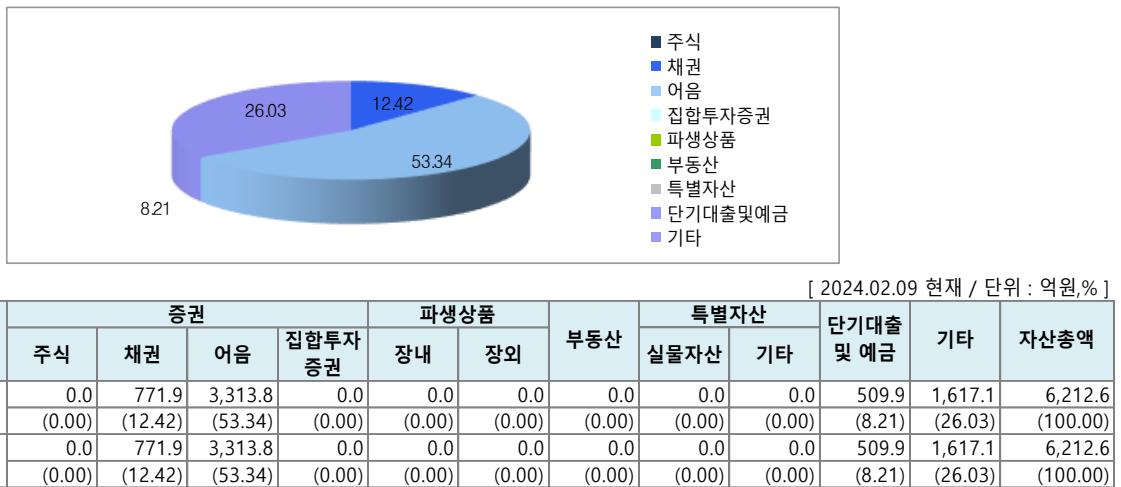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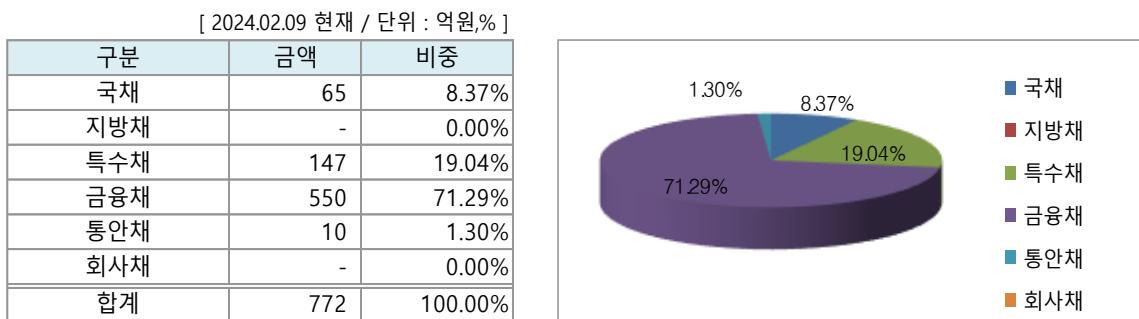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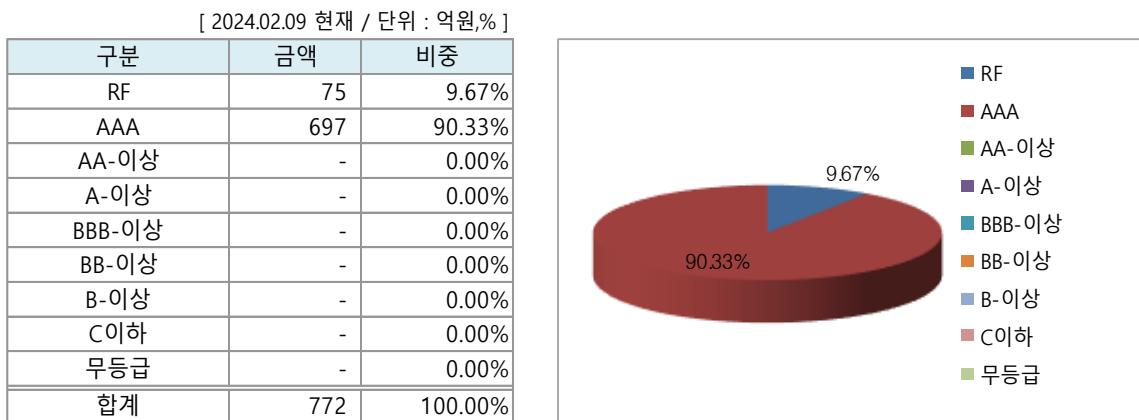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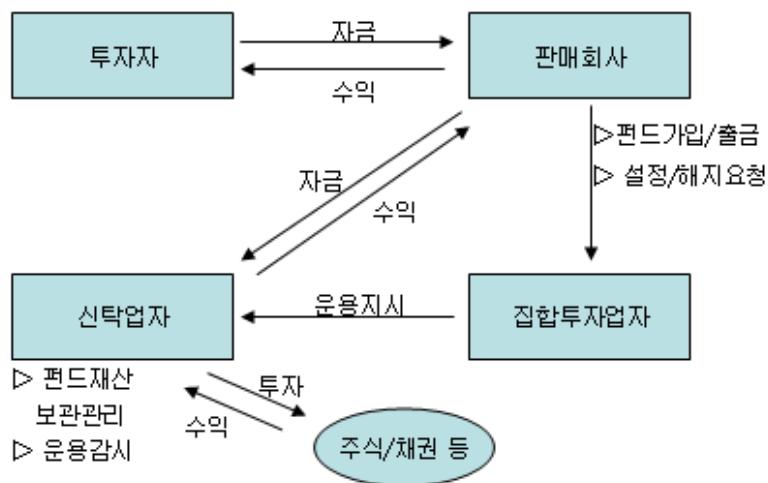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 나. 주요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3.12.31	22.12.31	항목	23.12.31	22.12.31
유동 자산	620.2	398.9	영업수익	294.1	275.9
고정 자산	773.3	904.3	영업비용	247.8	213.7
<b>자산 총계</b>	<b>1,393.5</b>	<b>1,303.2</b>	<b>영업이익</b>	<b>46.3</b>	<b>62.2</b>
유동 부채	102.3	77.3	영업외수익	39.3	0.9
고정 부채		-	영업외비용	0.2	48.7
<b>부채 총계</b>	<b>102.3</b>	<b>77.3</b>	세전순이익	85.4	14.4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18.5	4.6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965.4	898.5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4.7	6.3			
<b>자본총계</b>	<b>1,291.2</b>	<b>1,225.9</b>	<b>당기순이익</b>	<b>66.9</b>	<b>9.8</b>

## 라. 운용자산 규모

[ 2024.04.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405	91,193	1,827	7,737	4,327	18,365	17,407	934	171,364	321,557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02-3770-8880)
회사연혁	1955.10.11 설립 2004.05.31 금융감독원 등록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60길 17 (연락처: 02-3151-3500)
회사연혁	2000.08. (주)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 CS 자산운용(주)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홈페이지참조	<a href="http://www.woorifds.co.kr">www.woorifds.co.kr</a>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KIS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 02-3215-1400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T. 02-2251-1300	<a href="http://www.koreaap.com">www.koreaap.com</a>
NICE피앤티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T. 02-398-3966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T.02-721-5300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

"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합니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등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폐지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업무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 ·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 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 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 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 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http://www.wooriam.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위비개인MMF1호(국공채)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유안타증권	주요주주	증개거래	현금성	68,958
증권금융	관계수탁회사	증개거래	REPO	946,800

※ 상기 증개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호에 해당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증개업자선정기준

구분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p>-평가항목</p> <p>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및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p> <p>-선정방법</p> <p>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는 증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 및 매매체결 업무에 대해 최소 매 분기마다 평가하며,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각 증 개회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운용담당자는 증개회사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매담당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약정을 배분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관리/보관하는 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증권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

	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조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별침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별첨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 · 환매가 가능한 경우]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재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 · 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 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1)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③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중 큰금액)내에서 MMF 수익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 · 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